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0863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이강일 · 김성환 · 김남근  
박균택 · 이정문 · 이소영  
강준현 · 오기형 · 양부남  
이인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 주요내용

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 함.

나.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그 가액으로 한다.

제165조의18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br>(생략)<br><u>&lt;신설&gt;</u>                                                                                   |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br>(현행과 같음)                                                                                                 |
|                                                                                                                                    | ② <u>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그 가액으로 한다.</u> |
| ② (생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u>제2항</u> 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br>-----<br>-----<br>-----<br>-----<br>-----<br>---제3항---<br>-----.                                                     |
|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u>제3항</u> 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4항-----<br>-----<br>-----.                                                                                              |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 25. (생략)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5조의4제3항-----

-----

-----

5. ~ 25. (현행과 같음)